

# 06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FTA-PASS를 활용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개정 대응 안내

#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 FTA-PASS를 활용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개정 대응 안내



최소영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운영팀 주임



FTA-PASS는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 현재 한-아세안(ASEAN) FTA를 비롯한 총 24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판정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https://www.ftapass.or.kr>**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서비스·투자 협정으로 범위를 넓히며,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요 협정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아세안 FTA는 발효 당시 적용된 HS 2007 기준을 시작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따라 HS 2012, HS 2017로 기준연도를 개정해 왔다. 그리고 2026년 5월 1일,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적용되는 HS 기준연도가 HS 2017에서 HS 2022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되었다.

이러한 기준연도의 전환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던 품목이 개정 이후에는 미충족으로 판정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경우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HS 2022 기준에 맞추어 기존 품목의 HS코드(세번)를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품목과 원재료가 방대한 기업의 경우, 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TA-PASS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개정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HS 2022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개정된 기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조회 ▲원산지판정 및 충족 여부 확인 ▲FTA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신청) 기능을 시스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아세안 FTA 규정 개정에 발맞추어, FTA-PASS를 활용한 HS코드 등록부터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까지의 과정을 실제 시스템 화면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FTA-PASS의 기본적인 활용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단계	내용
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된 엑셀 양식*에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 정보를 작성한다.</li> <li>- 기준정보 : 거래처,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HS코드 등</li> <li>- 거래정보 : 구매단가, 판매단가, 근거서류</li> <li>* [양식다운로드] 버튼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li> </ul>
정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된 엑셀 파일을 시스템에 일괄 등록*한다.</li> <li>*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다.</li> </ul>
원산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물품을 선택한 후 [판정시작] 버튼을 눌러 판정을 실행한다.</li> </ul>
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의 원산지판정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li> <li>- 제품, 기준, 충족여부, 역내산 및 역외산 재료 정보 등 안내</li> <li>* '상세결과' 항목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이 나타난다.</li> </ul>
서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다.</li> </ul>
발급 및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확인서) 작성한 서류를 시스템에서 발급 및 출력한다.</li> <li>(기관발급) 작성한 신청 정보를 발급기관에 따라 전송하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심사 승인 후 최종 증명서를 출력한다.</li> </ul>

# FTA-PASS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개정 대응 가이드

## 1. FTA-PASS 접속 및 HS코드 메뉴 접근하기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홈페이지(https://www.ftapass.or.kr)에 접속한다.

〈FTA-PASS 홈페이지 초기화면〉



FTA-PASS 초기화면 계정정보 입력란에 순서대로 기업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 상단의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를 클릭하면 원산지판정을 위한 기초 정보 중 HS코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HS코드 메뉴 접근〉



## 2. HS 2022 기준 세번 등록하기

HS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기업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을 HS 2022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HS 기준연도에 따라 세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세번을 별도 검증 없이 그대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최신 HS 연계표 등을 통해 HS 2022 기준 세번을 정확히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로, FTA-PASS의 [HS정보조회] > HS연계표] 메뉴에서 과거 세번으로 최신 세번을 조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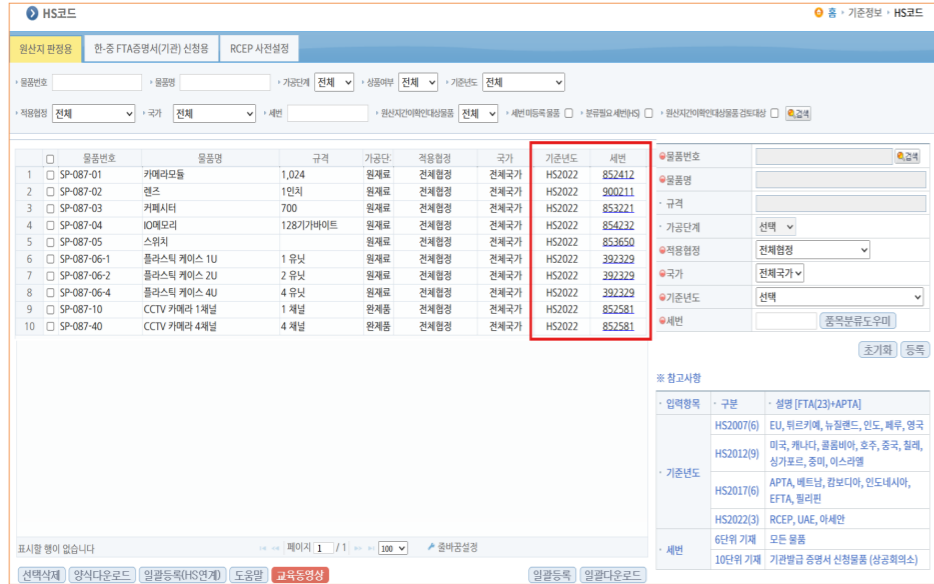
〈HS연계표 메뉴 화면〉

연계구분	HSK2007 코드	HSK2012 코드	HSK2017 코드	HSK2022 코드	HSK2022 품명(국문)	HSK2022 품명(영문)	변경여부
1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High-speed goods as specified in Subheading N	X → X → 0
2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2-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강화	Other, radiation-hardened or radiation-tolerant	X → X → 0
3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3-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	Other, night vision goods as specified in Subhea	X → X → 0
4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9-1000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 바코드, 안경, 시계, USB Micro camera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or de	Micro camera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or de	X → X → 0
5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9-2000	텔레비전 카메라	Television cameras	X → X → 0
6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2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With maximum take-off weight not more than	X → X → 0
7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2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	With maximum take-off weight more than 250	X → X → 0
8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23-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With maximum take-off weight more than 7 kg	X → X → 0
9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2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	With maximum take-off weight more than 25 k	X → X → 0
10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29-0000	기타	Other	X → X → 0
11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91-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With maximum take-off weight not more than	X → X → 0
12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92-0000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	With maximum take-off weight more than 250	X → X → 0
13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93-0000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With maximum take-off weight more than 7 kg	X → X → 0
14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94-0000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	With maximum take-off weight more than 25 k	X → X → 0
15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806.99-0000	기타	Other	X → X → 0
16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0-1010			X → X → 0
17	과거기준	8525.80-1010	8525.80-1010	8525.80-101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High-speed goods as specified in Subheading N	X → X → 0

세번 확인이 완료되면 [HS코드] 메뉴에서 수출(공급)물품과 원재료의 HS코드를 등록한다. 이때 원산지를 판정하고자 하는 적용협정(예: 한-아세안, 전체협정 등)을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 적용협정을 잘못 등록하는 경우, 해당 협정에 대한 판정이 수행되지 않거나 세번 누락으로 인해 판정이 불충족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HS코드] 메뉴 왼쪽에는 기등록된 HS코드 목록이 표시되며, 오른쪽에서는 선택한 품목의 상세 정보 확인 및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상단의 검색 조건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수정·삭제할 수 있다.

<HS코드 메뉴 화면>



등록 방식은 단건 입력과 엑셀 기반 일괄 등록을 모두 지원한다. 등록 대상이 많지 않은 경우 화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다수 품목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엑셀 양식을 활용한 일괄 등록 기능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원산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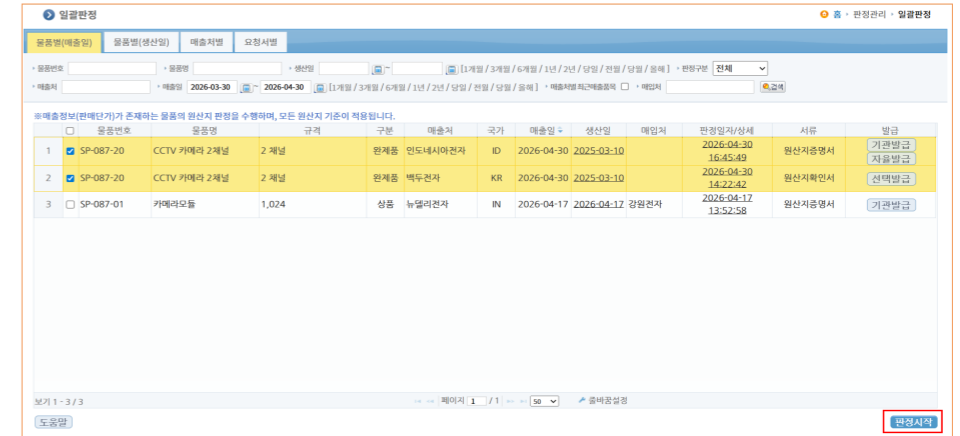
HS 2022 기준 세번 등록 후에는 원산지판정을 새로 수행해야 한다. HS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FTA-PASS에서는 [판정관리> 일괄판정] 메뉴를 통해 원산지판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일괄판정] 메뉴는 등록된 기준정보와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발효된 모든 협정으로 원산지판정을 수행하는 메뉴이다.

먼저 물품별(매출일) 탭에서 물품을 조회한다. 이때 상단의 검색 조건에서 조회할 완제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물품 목록에서 판정 대상 물품을 선택한 후, 오른쪽 하단의

[판정시작] 버튼을 누르면 판정이 수행된다. 판정이 완료되면 '판정일자/상세' 항목에 판정일시가 표시되며, 해당 판정일시를 클릭하면 원산지판정 결과 화면으로 이동하여 협정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괄판정 화면>



원산지판정 결과 화면에서는 협정별 충족 여부와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결과를 통해 역내산·역외산 재료 구성 및 판정 근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판정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원재료 구성이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HS 기준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 판정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 결과를 통해 적용 기준과 판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판정 결과 확인(총괄표)>



## 4. 서류작성 및 출력

원산지판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다. 한-아세안 FTA에서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C/O)와 원산지확인서 두 가지이며, 각각 작성 방법이 다르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류관리] FTA증명서(기관) 메뉴에서 신청할 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을 선택한 후, 오른쪽 하단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난다. 신청서는 원산지 제출번호를 포함하여 신청개요, 공통사항, 물품내역, 첨부파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한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작성 화면>

증명서를 신청하기 전 [C/O견본]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내용이 정확인지 최종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기관으로 신청정보를 전송한다. 증명서 신청 후에는 발급 진행상태 및 통보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상 승인될 경우 발급번호가 부여되어 통보된다.

### <원산지증명서 견본 출력>

원산지확인서는 [서류관리] 원산지확인서]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다. 작성 화면에서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물품, 원산지 포괄확인기간을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누른다. 이후 서명권자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원산지 확인서 출력] 버튼으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원산지확인서 작성 화면>

〈원산지확인서 출력〉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세번,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관련 정보가 오기재될 경우 수입국 세관의 사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산지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발급 및 출력 전 작성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HS 기준연도 변경은 기업의 원산지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HS코드 등록,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PASS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변화된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원산지관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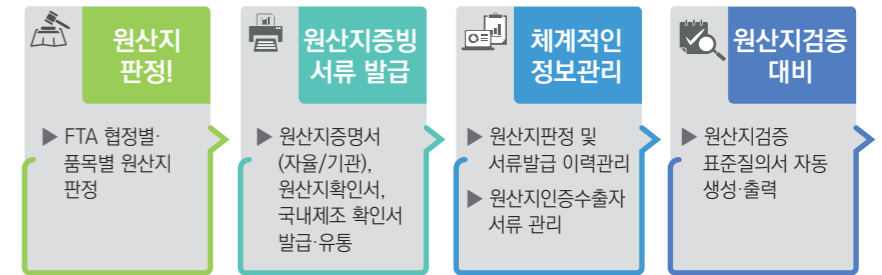
### ■ 시스템 개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 2. FTA-PASS 주요기능



##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수출 (재고관리기능 사용)	· 재고관리기법(일종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를 산출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출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 13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수출/국내공급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국내공급 (영세기업)	·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 운영팀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17: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mailto:fta-pass@origin.or.kr)

